

2026년 4/4분기 부식재료 구매(단가계약)

[부산의료원,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공동구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 방법
2026. 9. 7(월) 17:00 ~ 2026. 9. 15.(화) 10:00	· 2026. 9. 15.(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제한(지역)경쟁입찰 · 단가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가. 구매건명 : 2026년 4/4분기 부식재료 구매(단가계약)
- 나. 구매품명 : 가지 외 380종 구입(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 나. 계약기간 : 2026. 10. 1. ~ 2026. 12. 31.
- 다.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의료원 및 부산노인전문제2병원 지정장소
- 라. 납품방법 : 납품지시서에 의한 납품(공동수급 불허)
- ※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의료원 및 노인전문제2병원의 부식재료 공동구매 공고로서 낙찰자 선정 이후 각 기관의 입찰 품목에 대한 계약 체결 등 업무 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각각 진행합니다.
- 마. 기초금액(단가총액) : 금4,017,940원(면세/부가가치세 포함)
- ※ 추정금액(단가×예정수량) : 금254,137,140원(면세/부가가치세 포함)
- (의료원 : 185,070,460원 + 노인병원 69,066,680원)

2. 입찰방법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집행하며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경쟁 및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 다. 단가총액입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품목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라.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이 적용됩니다.
-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에 식품 납품을 허가받은 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로서 “물품내역서”의 **HACCP 제품에 대한 인증서 제출 가능 업체**

다. 당해 입찰물품의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납품이 가능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필한업체
- 임차차량(반드시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납품 시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및 차량 임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납품 시 온도를 준수하고 차량 온도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함)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가입 업체(1사고당 3억원이상)**

마. 납품을 위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한 업체

바. 「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산출내역서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물류회계과(담당 김다정,

☎051-607-2031)에게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0.4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 기준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자 중 탈락이 확실한 업체는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별표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사용예정량은 의료원과 노인병원 합산 예정량임
-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10점) : <물품구매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6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2~△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 다. **적격심사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또는 소득세납부 증명자료),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적격심사 신청자가 대리인인 경우 제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해당물품 HACCP 인증서(수산물, 김치류) 1부.
 - 냉동·냉장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1부.
 -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납품시 자동차등록증, 차량소독필증 및 차량 임차계약서 1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책임보상보험 증서 1부.
- 사무소, 작업장, 창고(보관시설) 등 시설, 점포소유 증빙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기타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등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추정금액(품목별 기초단가×예정사용량)의 100의 50이상의 입찰보증이행증권을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 사유 발생시에는 당원에 귀속됩니다.
- 다.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의 체결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단가는 낙찰율(입찰금액/기초금액)을 품목별 기초단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원 단위 미만 반올림)
- 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금액(품목별 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추정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 물품내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

찰특별유의서, 물품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서 제출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까지 홈페이지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정보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부산의료원 홈페이지 - 의료원소식 - 입찰정보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그 외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영양지원실(담당 임은진 ☎ 051-607-2913)에,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물류회계과(담당 김다정 ☎ 051-607-2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부산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 품 제 조 입찰에 한 함
		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30	
2. 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60	
3. 신 인 도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점수	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2.0	물 품 제 조 입 찰 에 한 한다.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1.5	
			C. 기능사 1인당	1.0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0.5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5.0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5.0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2.0	
			C. 미보유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2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25.0
없음	없음	없음	2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2. 입찰가격 (6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text{평점(점)} = 6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3. 신인도 (+2점 ~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고도인증	신기술 인증 등	1.0	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증	환경 및 기타 인증	1.0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기업	중소(제조)기업지원	2.0	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	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1.0	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0.5 0.4 0.3 0.2 0.5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8% 이상	0.3
			- 대기업 4% 이상, 중기업 4%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4% 이상	0.1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1.0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청년고용 우수기업	
			- 청년고용비율 4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4인 이상	1.0
			- 청년고용비율 3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3인 이상	0.8
			- 청년고용비율 2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2인 이상	0.6
			- 청년고용비율 10% 증가 또는 신규 청년고용 수 1인 이상	0.4
			F.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H.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I.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 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 업으로 인증한 자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 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2)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불공정 하도급	하도급법위반	-1	A. 최근 1년 이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1.0
2) 임금체불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2	A.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건당 -0.4
3)산업재해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4)사고사망 만인율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 발생 현황	-1	A.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고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 만인율 이상으로 공표한 자	-1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1),2)" 심사항목의 인증 등의 평가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활용·포함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증·특허 등을 직접 개발하여 받은 자에 한하여 평가하고, 동일 심사항목의 동일등급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자는 하나만 인정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내의 인증서를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세부심사항목별 취득점수의 20%를 가산 평가한다.
- 나) "2)"의 "B" : KS, CE, UL 및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평가는 국방부 수요 상용물자만 적용한다. 다만, 모듈 A(자기적합선언;DoC) 방식과 직접 생산자가 아닌 판매자 CE 인증서는 제외한다.
- 다)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인증이나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 라) "2)"의 "D", "E" : 특허·디자인등록 평가에서 실시권이 없는 특허권, 통상실시권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마)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 '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사) "5)"의 "A", "C"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평가는 주무부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 포함)의 장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확인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아) "5)"의 "B", "D" : 여성·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서 여성·장애인 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최근 3개월간 평균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여성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율이 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율이 1.5% 이상이고 최근 3개월간 평균 장애인근무자수가 3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하되, 대표자가 여성·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근무자수에 포함한다.

(예)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고용율(%)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월별 총근무자수의 합)

최근 3개월간 평균 여성근무자수 = 월별 여성근무자수의 합 ÷ 3개월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예 : 3월 11일 입사자의 경우 21일÷31일= 0.677419... = 0.6774)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 '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차) "5)의 "F", "G" : 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소기업 증빙자료 제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하는 창업기업 증빙자료 제출)과 대기업·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 평가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카) "5)의 "H"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증명서류에 한하여 평가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주2) 계약이행 성실도

가) "이행지연"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적용한다.

주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소(제조)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적용한다.

주4)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하고 “산업재해자”와 “사망사고만인율” 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5) 국제입찰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녹색.일반인증" "A", "B"와 "계약이행 성실도"의 "이행지연" 및 "계약질서 준수정도"의 "불공정하도급"만 적

용하여 평가한다.

주6)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별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점 ~ -2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